

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국 교육지원과)

2021. 6. 1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92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5. 28.
- 라. 회부일자 : 2021. 5. 28.

2. 제안이유

국가 정책 및 구민요구를 반영하여 평생교육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평생학습 사업에 사용되는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성인문자이해교육”을 “성인문해교육”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 나. “행복학습센터”를 “과학교육시설, 동네배움터”로 변경(안 제2조제4호)
- 다. “꿈마샘”을 “금마샘”으로 변경(안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개정안은 구민요구를 반영하여 평생교육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평생학습 사업에 사용되는 명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나. 주요내용

- 1) “성인문자이해교육”을 “성인문해교육”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 2) “행복학습센터”를 “과학교육시설, 동네배움터”로 변경(안 제2조제4호)
- 3) “꿈마샘”을 “금마샘”으로 변경(안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4항)

다. 검토결과 :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정의’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함.¹⁾ 따라서, ① “성인문자이해교육”을 “성인문해교육”으로 변경하여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용어를 따르고,²⁾
② 평생교육 사업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1)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83쪽

2)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 (이하 생략)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 (이하 생략) ...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아울러, “행복학습센터”를 “과학교육시설, 동네배움터”로, “꿈마샘”을 “금마샘”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평생학습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므로, 용어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붙임 : 관련 법령 1부.

평생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